

#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8,169,106	11,645,073
일반회계	375,508,019	11,265,241
특별회계	12,661,087	379,833
기타특별회계	12,661,087	379,833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352,780	40,583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2,813,390	84,402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894,482	56,834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51,027	4,531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5,335	1,960
드림빌특별회계	3,204,635	96,139
주택사업특별회계	77,829	2,335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45,522	10,36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56,087	82,68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02,11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